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경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함

주요내용

가.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대상 및 규모 삭제 (안 제25조)

-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18조 제1항 중복

나. 건축물 경관심의 생략 대상 신설 및 정비 (안 제26조)

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과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심의 생략
- 표준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삭제
-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 생략

다. 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(안 제27조)

- 위원장(부시장→호선) : 2017.2.28. 「경관법 시행령」 개정
- 부위원장(호선→ 조항 삭제) : 상위법 근거 없음

라. 경관심의 시설물 심의대상 삭제 (안 제28조)

- 『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』에서 심의 - 별표2 관련

마. 경관자문 시설물 심의대상 삭제 (안 제31조)

- 『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』에서 심의 - 별표3 관련

바. 별표 정비

-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정비 및 타 위원회 중복 심의대상 삭제

개정조례안

<input type="checkbox"/> 신·구조문대비표	: 붙임
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법령발췌서	: 붙임
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사업계획서	: 해당없음
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수반사항	: 해당없음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예고결과	: 붙임

- 입법예고 : 2017. 7. 14. ~ 8. 3.(20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있음 ※ 의견 일부 반영하여 조문 정비

기타참고사항

- 현행조례
- 방침결정문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경관조례” 를 “안산시 경관 조례”로 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

2.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

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업인

 나. 「농지법 시행령」제29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

3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

4. 「건축법」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

5. 「건축법」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이면서 벽체, 지붕 등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

6.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

제27조제1항 중 “제5항” 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며, 제6호의 “부서장” 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하고,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삭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심의 신청 건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소관 실과		도시디자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
	담당팀장 직위·성명	경관팀장 곽재학
	담당자 성명·전화	윤인숙 (행정 2632)

[별표]

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

구 분	건 축 물 의 종 류
1. 경관지구	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
2. 미관지구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3. 공공 건축물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 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동 등),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납골당 등) 등 나. 공공기관 및 안산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4.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안산시 경관조례	안산시 경관 조례
<p>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</p> <p>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</p> <p>②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안산시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사업에 한한다.</p>	<p>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</p> <p>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</p> <p>②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또는 시행 주체는 안산시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사업에 한한다.</p>
<p>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</p> <p>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」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</p> <p>2.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. 다만,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) 농어업인의 기준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다.</p> <p>2) 농어업인의 주택의 기준은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.</p> <p>3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(이하 “표준설계도서”라 한다)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</p>	<p>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</p> <p>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</p> <p>2.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업인</p> <p>나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</p> <p>3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</p> <p>4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</p>

현 행	개 정 안
4.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 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	5. 「건축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이면서 벽체, 지붕 등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 6.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
제27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3. ~ 5. (생략) 6.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<u>부서장이</u> 된다. 7. ~ 8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27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<u>제6항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<삭제>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담당팀장</u> ... 7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영 제24 조제3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별표 2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</u> 4. (생략)	제28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 4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별표 3의 시설물에 관한 자문</u> 4. (생략)	제31조(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 4. (현행과 같음)

별표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
[별표 1]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관심의 건축물		[별표]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건 축 물 의 종 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경관지구</td> <td>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2항 건축물 제외)</td> </tr> <tr> <td>2. 미관지구</td> <td>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m²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 건축물</td> <td> 가.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남골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</td> </tr> <tr> <td>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</td> <td>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4호 가목,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건 축 물 의 종 류	1. 경관지구	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2항 건축물 제외)	2. 미관지구	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m ²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3. 공공 건축물	가.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남골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4호 가목,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
구 분	건 축 물 의 종 류										
1. 경관지구	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2항 건축물 제외)										
2. 미관지구	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m ²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									
3. 공공 건축물	가.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·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교육연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허가)법의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 문화·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남골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									
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4호 가목,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									
[별표2] 경관심의 시설물		〈삭제〉									
[별표3] 경관자문 시설물		〈삭제〉									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3032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부분 내 경관지구의 심의대상을 일부 수정함.

주요내용

- 심의대상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하게 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기준을 수정함. (안 제26조, 안 별표)

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

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」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</p> <p>2.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. 다만,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) 농어업인의 기준은 「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다.</p> <p>2) 농어업인의 주택의 기준은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.</p> <p>3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(이하 "표준설계도서"라 한다)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</p> <p>4.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 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</p>	<p>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</p> <p>2.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 주택(대부동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)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업인</p> <p>나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</p> <p>3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</p> <p>4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</p> <p>5. 「건축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이면서 벽체, 지붕 등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6.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</p>	<p>제26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 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</p> <p>5. ~ 6. (원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
[별표 1] □ 경관심의 건축물		[별표] 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건축물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경관지구</td> <td>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 제2항 건축물 제외)</td> </tr> <tr> <td>2. 미관지구</td> <td>7층 이상으로서 면적 2,000㎡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 건축물</td> <td>가. 공공행정기관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관리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후화시설, 고속면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문화设施(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</td> <td>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기숙, 나들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건축물의 종류	1. 경관지구	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 제2항 건축물 제외)	2. 미관지구	7층 이상으로서 면적 2,000㎡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3. 공공 건축물	가. 공공행정기관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관리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후화시설, 고속면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문화设施(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기숙, 나들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		
구 분	건축물의 종류													
1. 경관지구	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(단, 제26조 제2항 건축물 제외)													
2. 미관지구	7층 이상으로서 면적 2,000㎡ 초과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
3. 공공 건축물	가. 공공행정기관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주민센터) 등 나.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시에서 관리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의료시설, 노후화시설, 고속면구시설 등) 라.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(위기) 대상 건축물 (소방서, 우체국 등 포함한다) 마. 공공문화设施(관람장, 전시장 등) 바. 공공화장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사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												
4. 그 밖의 지역내 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기숙, 나들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
[별표 2] 경관심의 시설물 [별표 3] 경관자문 시설물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건축물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경관지구</td> <td>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평미터 초과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2. 미관지구</td> <td>7층 이상 또는 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 건축물</td> <td>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령의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행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등), 문화 및 청소년 전공연장, 문화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 구시설, 노후화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등 나. 공공기관 및 단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4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</td> <td>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5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</td> <td>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건축물의 종류	1. 경관지구	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평미터 초과 건축물	2. 미관지구	7층 이상 또는 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	3. 공공 건축물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령의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행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등), 문화 및 청소년 전공연장, 문화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 구시설, 노후화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등 나. 공공기관 및 단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4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5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
구 분	건축물의 종류													
1. 경관지구	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평미터 초과 건축물													
2. 미관지구	7층 이상 또는 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													
3. 공공 건축물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령의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행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등 등), 문화 및 청소년 전공연장, 문화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 구시설, 노후화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낭금당 등) 등 나. 공공기관 및 단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												
4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												
5. 그 밖에 정관관리로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나. 「건축법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												